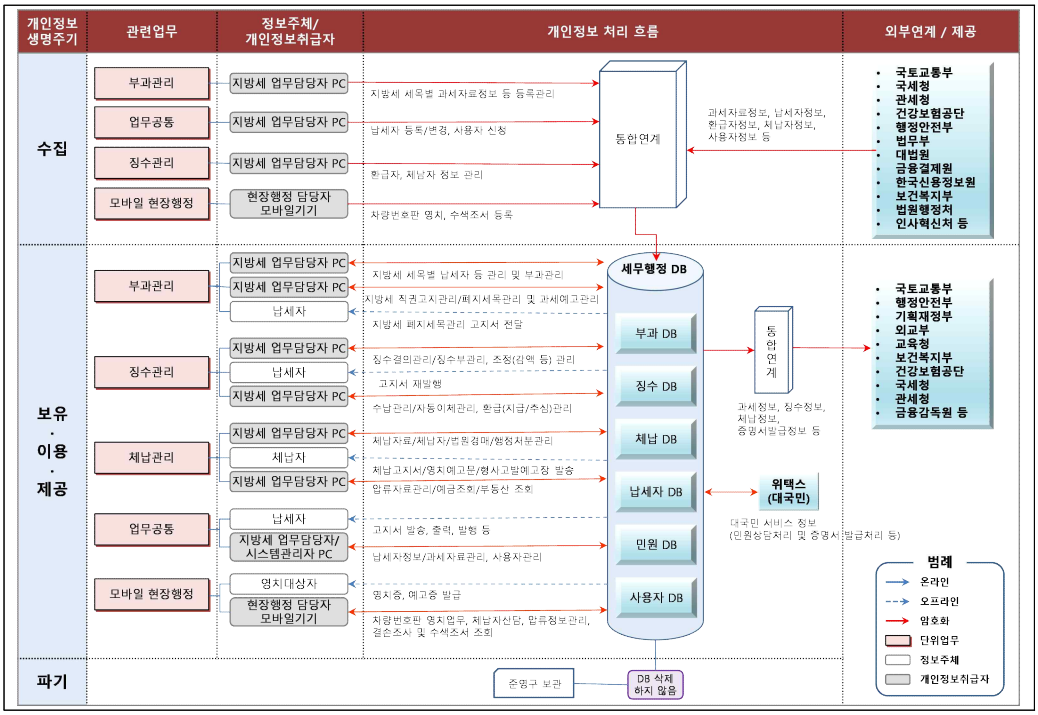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경기도 남양주시</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씨에이에스</td><td>평가 기간</td><td>2026.04.27 ~ 2026.05.29</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6. 1. ~ 2026. 12</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4">개인정보파일 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 colspan="2">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취득세 파일</td><td>3,890,813</td><td colspan="2">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국토교통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주택도시보증공사</td><td>취득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td></tr>
<tr><td>담배소비세 파일</td><td>61</td><td colspan="2">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행정안전부(대국민), 관세청</td><td>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td></tr>
<tr><td>자동차세 파일</td><td>589,333</td><td colspan="2">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td><td>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td></tr>
</table>

	재산세 파일	546,048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주택도시보증공사 ,관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국세청,근로복지공단,기획재정부,병무청,통계청,한국부동산원,기술보증기금,행정안전부	재산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주민세 파일	532,914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한적십자사	주민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지방세 제증명파일	462,684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민금융진흥원, 행정안전부(정부24, 대국민)	납부 증명을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지방소득세 파일	462,684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세청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등록면허세 파일	1,090,726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지역자원 시설세 파일	8,751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경기도 남양주시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차세대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table>
<tr><td></td><td colspan="2">
</td></tr>
<tr><td rowspan="2">영향평가기준</td><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8개 항목 제외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5개 항목 제외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td></tr>
<tr><td>주요 평가기준</td><td>-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td></tr>
<tr><td>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 colspan="2"><u>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u>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제135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u>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u>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td><td>-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

<u>3. 영향평가 수행 시 “부분이행”, “미이행”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 사항</u>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접수부서/담당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권리 요청 이 적절한 부서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정보주체의 권리(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어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훼손 및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인지하지 못해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유출 상황 발생 시 조직 구성원들이 절차와 역할을 숙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 내부관리계획 보완
- 정보주체 권리보장과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수립 (1.4.1)
- 정보주체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절차 수립 (1.4.2)
•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완
- 개인정보 제3자제공 현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3.3.1)
- 개인정보처리 재 위탁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3.4.1)
• 유출 대응 모의훈련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 계획 및 훈련 시행 (1.3.2)</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 개인정보 제3자제공 현황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확인
• 개인정보처리 재 위탁사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확인</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3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3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2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19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td></tr>
</table>